

2003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제77조, 동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감천1동 사업대상지(실내체육관 건립부지)로 확정된 부지 및 건물을 구유재산으로 취득 및 취득후 건물을 처분(멸실) 코자함.
- 대상재산 현황 (단위: m', 천원)

| 사 업 명 | 구분 | 소 재 지 | 면 적 (평) | 지 목 (구조) | 시설개요 | 소요예산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계 | | | 8,715 (2,635) | | | 3,218,588 |
| 감천1동실내체육관 건립부지매입 | 토지 | 702-1외 1필지 | 3,642 (1,101) | 공장용지,대 | ※실내체육관 예정부지 | 2,504,048 |
| | 기존 건물 | 위 지 상 | 5,163 (1,561) | 철골경량조 철근콘크리트 | · 지하1,지상4층 건물의 7개동 (사무실, 공장) | 624,540 |

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 제10,11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호

4. 검토의견

- 본건 사항은 주요구유재산을 취득·처분(멸실)을 함에 있어 “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근거하여 지원된 금액을 “사하구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”에 의거 지출하되 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”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을 승인 받으려는 사항으로

[재산취득사항]

- 총지원금 11,396백만원중 본건 재산취득 소요예산은 3,218,588천원으로, 감천1동지내의 실내체육관건립을 하기 위함인대 소유주와는 이미 감정가에 의거 매각키로 동의서 징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, ‘2002. 12. 30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동민대표(자치위원 자생단체회원등)들의 동의 (총 233명중 202명동의)를 얻어 놓은 상태에 있으며,
- 해당부지 2필지중 한전부지는 나대지로 되어있고 (주)유니크 공장부지는 ‘2002. 11. 30’ 공장이전이 완료된 상태에 있으나 현재까지 근거당이 설정되어 있어 취득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

[처분사항]

- 재산취득후 본사업 목적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(처분)해야하는 절차에 대비 금번에 사전승인을 받아 놓는 의도를 볼 때 당연한 절차임
- 위의 정황들을 살펴보건대 현재로서는 법적, 예산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승인해도 좋을것으로 사료됨

2003. 1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